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 : 2020.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구미시 산동면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0. 9. 10. 자로 읍(읍) 승격 승인을 받음에 따라 읍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산동면을 산동읍으로 승격 설치(안 제2조)
- 나. 산동읍 관할구역(안 제3조)
- 다. 읍 승격에 따른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개정(안 부칙)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4385(2020. 9. 10)호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읍) 설치 승인」 완료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구미시 산동면을 구미시 산동읍으로 한다.

제3조(관할구역) 구미시 산동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 명	읍의 명칭	관 할 구 역
구미시	산동읍	종래의 산동면 일원 (동곡1리, 동곡2리, 도중리, 적림리, 성수1리, 성수2리, 신당1리, 신당2리, 신당3리, 신당4리, 신당5리, 신당6리, 신당7리, 신당8리, 신당9리, 신당10리, 신당11리, 신당12리, 신당13리, 신당14리, 신당15리, 봉산1리, 봉산2리, 임천리, 인덕1리, 인덕2리, 인덕3리, 인덕4리, 인덕5리, 인덕6리, 인덕7리, 인덕8리, 인덕9리, 백현1리, 백현2리, 송산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산동면장의 사무는 산동읍장이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산동면, 산동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여러 문서 및 처분 등은 “산동읍, 산동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고아읍란 다음에 산동읍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산동면란을 삭제한다.

산 동 읍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강동로 1038-5
-------	-------------------------

②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건소의 선산보건소 관할 표 중 고아읍보건지소란 다음에 산동읍보건지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산동면보건지소란을 삭제한다.

산동읍보건지소	구미시 산동읍 강동로 999-6	산동읍 일원
---------	-------------------	--------

별표 1 선산보건소 관할 표 중 송백보건진료소란 및 임봉보건진료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송백보건진료소	구미시 산동읍 송백로 860	백현1·2리, 송산리
임봉보건진료소	구미시 산동읍 임봉길 55	봉산1·2리, 임천리

별표 3 관할구역란 중 ‘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을 ‘선산읍, 고아읍, 산동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장천면’으로 한다.

③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고아읍란 다음에 산동읍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산동면란을 삭제한다.

산동읍	종래의 산동면 일원
	종래의 옥계동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1310, 468-1, 468-5, 469, 470-1, 471, 산53-1을 신당리에 편입

④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고아읍란 다음에 산동읍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산동면란을 삭제한다.

산동읍	동곡리	동곡리 일원
	도중리	도중리 일원
	적림리	적림리 일원 종래의 적림리 중 신당리에 편입된 지역을 제외
	성수리	성수리 일원
	신당리	신당리 일원 종래의 신당리 중 인덕리에 편입된 지역을 제외 종래의 옥계동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1310, 468-1, 468-5, 469, 470-1, 471, 산53-1을 편입 종래의 인덕리 1124, 1125, 1130, 1131을 편입 종래의 적림리 산54-1, 산82-1을 편입
	봉산리	봉산리 일원
	임천리	임천리 일원
	인덕리	인덕리 일원 종래의 인덕리 중 신당리에 편입된 지역을 제외 종래의 신당리 1490~1504, 1690, 1695, 1699을 편입
	백현리	백현리 일원
	송산리	송산리 일원

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을 별표 2의2로 하고 별표 2의2 중 “산동면”을 각각 “산동읍”으로 한다.

⑥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고아읍란 다음에 산동읍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산동면란을 삭제한다.

산동읍	동곡리	2	동곡1리	동곡1리 일원
			동곡2리	동곡2리 일원
	도중리	1	도중리	도중리 일원
	적림리	1	적림리	적림리 일원
	성수리	2	성수1리	성수1리 일원
			성수2리	성수2리 일원
	신당리	15	신당1리	신당1리 일원
			신당2리	신당2리 일원
			신당3리	신당3리 일원
			신당4리	신당4리 일원
			신당5리	신당5리 일원
			신당6리	신당6리 일원
			신당7리	신당7리 일원
			신당8리	신당8리 일원
			신당9리	신당9리 일원
			신당10리	신당10리 일원
			신당11리	신당11리 일원
			신당12리	신당12리 일원
			신당13리	신당13리 일원
			신당14리	신당14리 일원
			신당15리	신당15리 일원
	봉산리	2	봉산1리	봉산1리 일원
			봉산2리	봉산2리 일원
	임천리	1	임천리	임천리 일원

	인덕리	9	인덕1리	인덕1리 일원
			인덕2리	인덕2리 일원
			인덕3리	인덕3리 일원
			인덕4리	인덕4리 일원
			인덕5리	인덕5리 일원
			인덕6리	인덕6리 일원
			인덕7리	인덕7리 일원
			인덕8리	인덕8리 일원
			인덕9리	인덕9리 일원
	백현리	2	백현1리	백현1리 일원
			백현2리	백현2리 일원
	송산리	1	송산리	송산리 일원

⑦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표 중 고아읍란 다음에 산동읍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산동면란을 삭제한다.

산동읍	적림리, 성수리	동곡리, 도중리, 적림리, 신당리, 임천리, 인덕리, 봉산리
-----	----------	-----------------------------------

⑧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4호나목 중 “산동면”을 “산동읍”으로 한다.

⑨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산동면”을 “산동읍”으로 한다.

⑩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소각)유치지역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소각)유치지역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소각)유치지역 읍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산동면(이하 “면”)”을 “산동읍(이하 “읍”)”으로, “면발전지원기금”을 “읍발전지원기금”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조제2항 단서 중 “면”을 각각 “읍”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조제2항 중 “면발전협의회”를 각각 “읍발전협의회”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면주민”을 “읍주민”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면발전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읍발전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⑪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산동면”을 “산동읍”으로 한다.

별표 1 중 “산동면”을 “산동읍”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거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산동면을 인용한 것은 산동읍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①, ② 생략

③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읍으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소 관 부 서		총 무 과
입 안 자	과 장	박 주 영
	담 당	김 성 학
	담 당 자	조 영 상 (480-6762)